

제 1305호  
1986.8.5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편집인: 서울특별시청  
 인쇄: 서울특별시청  
 전화: 731-6111-3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  
 화: 735-3337

장	공	관	장	공	장
장	공	관	장	공	장
장	공	관	장	공	장
장	공	관	장	공	장

# 시보

## 차례

- ◎ 고 시  
제 554 호 : 쇠고기, 돼지고기 및 산지소값기준연동가격표결정 ..... 2
- ◎ 공 고  
제 43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장) 시행허가 및 허가변경에 따른 공람 ..... 4  
제 437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부분준공 ..... 4  
제 438 호 : 국내여행알선업체취소매고 ..... 5  
제 440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 ..... 6  
제 441 호 : 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 ..... 6
- ◎ 사 령

공										
람										

1. 시 공두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554 호

최고기, 돼지고기 및 산지 소값  
기준 연동가격표 결정

최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  
행에 관한 규정(농수산부고시 87-47  
호, 85.8.22)에 의거 서울특별시 관

내에 적용할 최고기 연동가격표(저  
육경락가격 및 산지소값기준) 및 돼  
지고기 연동가격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6. 8. 5

서울특별시 장

1. 최고기 연동가격표(저육경락가격  
및 산지소값기준): 별첨
2. 돼지고기 연동가격표: 별첨
3. 시 행 일: 1986.8.6부터

최고기 연동 가격표

산지소값 기준 연동가격표

(단위: 원)

(단위: 원)

저육경락가격 (최육 키로당)	적정연동가격 (정육 500그램당)	산지소값 (순소 400키로기준)	적정연동가격 (정육 500그램당)
3,600 원	2,950 원	900,000 원	2,950 원
3,700	3,050	920,000	3,000
3,800	3,100	940,000	3,050
3,900	3,200	960,000	3,100
4,000	3,250	980,000	3,150
4,100	3,300	1,000,000	3,200
4,200	3,400	1,020,000	3,250
4,300	3,450	1,040,000	3,300
4,400	3,550	1,060,000	3,350
4,500	3,600	1,080,000	3,400
4,600	3,650	1,100,000	3,450
4,700	3,750	1,120,000	3,500
4,800	3,800	1,140,000	3,550
4,900	3,900	1,160,000	3,600
5,000	3,950	1,180,000	3,650
		1,200,000	3,700

## 돼 지 고 기 연 동 가 격 표

(단위: 원)

지육경락가격 (지육키로그램당)	적정연동가격 (정육 500그램당)	지육경락가격 (지육키로그램당)	적정연동가격 (정육 500그램당)
2,000 원	1,500 원	2,750 원	2,100 원
2,050	1,600	2,800	2,150
2,100	1,650	2,850	2,150
2,150	1,700	2,900	2,200
2,200	1,700	2,950	2,250
2,250	1,750	3,000	2,250
2,300	1,800	3,050	2,300
2,350	1,800	3,100	2,350
2,400	1,850		
2,450	1,900		
2,500	1,950		
2,550	1,950		
2,600	2,000		
2,650	2,050		
2,700	2,05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3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시장)시행허가 및 허가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54 호('86.4.21)로 도로결정, 동고시 제 148 호('86.3.12)로 허가변경된 도시계획사업(시장) 및 동고시 제 342 호('86.5.29)로 허가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 및 시행자변경 신청등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별도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1986.8.5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사업(도로) - 하나님의 교 회신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 1) 시행지: 구로구개봉동산 21 의 8 - 구 로구 개봉동 416-2
- 2) 시행규모: 폭 6 m, 연장 230 m
- 3) 시행자: 학교법인 한일학원이 사장 로 이엘험투티
- 4) 시행기간: '86.8.1 - 86.12.31

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시장, 도로) 변경-고척산업용품 중합상가 및 진입 로 개설공사

1) 사업시행자 변경

- 당 초: 용산구후암동 358-17 동국건설(주) 대표 문 경 일
- 변 경: 용산구후암동 358-17 동국산업(주) 대표 문 경 일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의의권리명세: 생략 라. 토지(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 략

마. 공람기간: '86.8.1-86.8.14

바.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 하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공고제 437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부분 준공

1. 서울시 고시 제 225 호('83.4.18)로 공원조성 시행 허가 되고 서울 시 고시 제 629 호('85.9.23) 및 서울시 고시 제 494 호('86.7.18)로 사업 계획 일부 변경 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p>동대문구 망우동산 69-1번지 용마 자연공원(망우구역)조성사업중 부분준공이 인정되어 도시계획법 제 8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 계획사업(공원조성)부분 완료하였 기 이를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p>	<p>제인석계 노선 1986. 8. 5 서울특별시 공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동 산 69-1번지 나. 사업의 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용마자연공원조성사업 부분 준공 다. 부분준공 내역</p>
---	--

시설구분	시설명	규모	비고
유회시설	청 용 열 차	430 m	
	관 략 차	15 m	
	회 전 목 마	14 m	
	회 전 비 행 기	15 m	
	회 전 그 네	18 m	
	다 략 취 틀	12 m	
	회 전 보 트	11.2 m	

<p>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망우동 389-2 평산신씨 전점공마: 중중 대표 신 흥 균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착공년월일: 1983.5.2 준공예정년월일: 1986.12.31 바. 산업부분 완료도면: 별첨 (생략)</p>	<p>◎ 서울특별시공고제 438 호 국내여행업선업채취소여고공고 아래의 국내여행업선업채취는 관광사업법 제 10 조에 의한 등록요건이 결여업체인바 86.8.30일한 개선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됨을 이에 공고한다. 1986. 8. 5 서울특별시 장</p>
---	---

- 아 래 -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유	개선(소명자료제출)시한
122	취예방	반용설	영등포구여의도동 36-2 (여의도백화점내)	무단폐쇄 (등록기준결여)	'86. 8. 30
125	뉴동양 여행사	이영식	성동구성수 2가 212-12	무단폐쇄 (등록기준결여)	"

◎ 서울특별시공고제 440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1 호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

소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6. 8. 5

서울특별시 장

다 음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취소일자	비 고
227	성원건설	중구주교동 176-8	최준석	'86.7.31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위반
295 840	쌍계전기기업사 신성건설	" 입정동 3-4 " 을지로 3가 65-3	김태웅 김장년	" "	

◎ 서울특별시공고제 441 호

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

를 실효처분 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6. 8. 5

서울특별시 장

면허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취 분	사 유
제 2 종 전기 공사업 제 1170 호	동광정밀 공업사	구로구독산동 1006-117	김문환	면허실효 처 분	전기공사업 제 30 조 5 항 (공사업폐지)

사 명

명제 340 호

대통령 비서실  
서기관 이 상 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명함.  
지방서기관에입함. '86.7.26 대통령  
내무근무불명함. '86.7.26 서울특별시장

인천직할시 수도권 행정과장  
행정사무원 김 경 옥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전출을명함.  
지방행정사무원에입함. '86.7.26 대통령  
내무근무불명함. '86.7.26 서울특별시장

© 1986년 8월 5일자

명제 341 호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권택상	부지운 명함.	내무국	지방행정사무원
안현호	"	"	"
목영만	"	"	"

명제 342 호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김남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1월간 감봉에 처함.	농축과	지방축사
이길동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1월 간 감봉에 처함.	중립건설본부	지방축사
송주봉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건 에 처함.	북문시정청	지방축사
목영옥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 2, 3호의 규정에 의거 1 월간 정직에 처함.		지방축사

서울특별시청

◎ 1986년 8월 5일자				명제 34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한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올림픽관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명제 34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신정원	내무국 총부과 파견 근무 ( '86.8.6 ~ 12.31 까지 )		강서구	지방행정서기	
				발령제 345호	
성명	발령부서	직위(호봉)	직급	비고	
안상호	전자계산소	전산전기기사 ( 2호봉 )	지방별정직 8급상당	신규	
				○ 명제 34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광명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 항 제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정직 2월" 에 처함.		전자계산소	지방행정서기	
김완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 거 "견책" 에 처함.		보건환경연구소	지방행정정보조원	
서울특별시					